

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 4의3] <신설 2025. 10. 21.>

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(제67조의2제2항·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·제3항 관련)

1. 자연환경 영향인자

- 가.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
- 나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·보호물(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)
- 다.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
- 라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
- 마.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
- 바. 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
- 사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
- 아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(서식지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판단한다)
- 자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
- 차.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
- 카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- 타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물·보호구역(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말한다)
- 파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
- 하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
- 거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
- 너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지역
- 더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

- 1)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
- 2)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
- 3)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
- 4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

2. 생활환경 영향인자

가.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

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- 2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- 4)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- 5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- 6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나. 유해물질 배출시설

- 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
- 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